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제1조

일반 규정

1. 제14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의 고용인이나 정부 또는 정부 부처에 의하여 임명된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재패널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2.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제2조

통보

1. 양 당사국과 중재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레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모든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모든 통보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영국 국제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제출된다.
4.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제3조

중재 개시

1. 가.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이 추첨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제14.5조제3항에 언급된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국이 자국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선정은 각 당사국의 대표자가 임석하여 이루어진다.
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회합하며 그 사안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다.
2. 가. 중재패널 설치일부터 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문제되는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판정하며, 제14.7조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

- 나.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에 대하여 합의된 위임 사항을 합의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최초 서면 입장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2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

사국은 최초 서면입장의 전달일 후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제5조

중재패널 작업

1. 중재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 심의에 보조인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4.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정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6.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와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제14.7조제2항의 기한은 수정될 수 없다.

제6조

교체

1. 중재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할 경우, 후임은 제14.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다.

2.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부속서 14-다에 대한 중재인의 실질적인 위반의 바탕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던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3. 의장을 제외한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인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도 중재 패널의 의장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중재인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장이 발견하는 경우, 그 의장은 원 중재인이 구성원이었던 제14.18조제1항에서 언급된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한다. 원 중재인이 제14.5조제2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그 후임은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이 제안했던 개인의 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4. 중재패널의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의장을 교체하고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정한다.

양 당사국이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도 제14.18조제1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선정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에게 그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은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뽑혀진다. 의장을 교체할 필요에 대한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원 의장이 부속서 14-다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이 인이 결정하는 경우, 그 인은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14.18조제1항에 언급된 개인의 명부의 잔여 구성원 중 하나를 추첨으로 새로운 의장으로 선정한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당사국이 자국의 대표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의 대표자가 임석하고,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6. 중재패널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7조

심리

1.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공중에게 비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양 당사국 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제소 당사국이 대한민국일 경우 런

던에서, 제소당사국이 영국일 경우 서울에서 개최된다.

3.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4.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임석한다.

5. 다음의 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 인력, 통역가, 번역가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중재인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심리일 5일 이전에 그 당사국 대신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다른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7. 중재패널의 심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양 당사국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공개된다. 당사국의 서면 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8.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9.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당사국에게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10.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양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11.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서 사본을 받는다.

2.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9조

비밀 유지

이 부속서 제7조제7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 회의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그 중재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입장에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방적 접촉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재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1.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해야 하고, 중재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2. 그 서면입장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중재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서면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서면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서면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제12조

긴급사건

제14.7조제2항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제13조

번역 및 통역

1. 제14.3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이 부속서 제3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회합 이전에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 입장

을 다른 쪽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국은 구두 입장을 양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3. 중재패널 판정은 양 당사국이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 중재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기한 계산

이 부속서 제2조제5항의 적용을 이유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제15조

그 밖의 절차

이 부속서는 제14.9조제2항, 제14.10조제2항, 제14.11조제3항 및 제14.1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이 부속서에 규정된 기한은 그 다른 절차에서 중재패널 판정의 채택을 위하여 규정된 특별 기한에 맞게 조정된다.